

# KERI Brief

##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wlim@keri.org)

2018년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OECD 35개 국가 중 17위로 중위권이며, 2016년부터 조세경쟁력지수가 하락 중이다(12위('16년) → 15위('17년) → 17위('18년)). 반면,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2017년 말 법인세 인하(35% → 21%), 해외자회사배당금 과세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등 세제개혁을 통해 순위가 4계단 상승했으며, 특히 법인과세 부분을 15계단이나 상승시켰다. 우리나라는 중위권이었던 법인과세가 2018년 하위권(28위)으로 하락하면서 총 순위의 하락에 큰 영향을 주었고,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국제조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 → 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25%)은 OECD 평균(21.9%)보다 높고 OECD 35개 국가 중 8번째로 높다. 국제조세 분야의 조세경쟁력지수는 계속 하위권(30~32위)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OECD 국가 중 5개국만 적용하는 거주지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그 한계 때문에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지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취약분야인 법인과세와 국제조세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처럼 세제를 개선하지 않고 형평만을 우선하는 증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면서 조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과세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첫 번째, 법인과세 분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R&D 조세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법인세율은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과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므로 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 R&D 세액공제의 대상 및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두 번째, 국제조세 분야는 근본적인 과세방식의 전환, 즉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

## I. 검토 배경

□ 미국의 Tax Foundation\*이 매년 발표하는 조세 국제경쟁력지수(The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는 조세를 경쟁력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평가와 점수화를 통해서 OECD 35개국<sup>1)</sup>의 순위를 발표하는 것임<sup>2)</sup>

\* Tax Foundation은 1937년 설립된 조세 분야의 비영리 연구단체로서 2014년부터 매년 조세의 국제경쟁력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 경쟁력 있고 중립적인 조세는 충분한 세수 확보와 동시에 경제성장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지만, 부실한 조세는 경제의 왜곡과 고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글로벌화된 경제 상황에서 조세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국제경쟁력지수의 순위는 큰 의미를 가짐

□ 2018년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OECD 35개 국가 중 17위로 중위권이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인상\* 등 영향으로 조세경쟁력지수가 하락 중임[12위('16년) → 15위('17년) → 17위('18년)]

\* 2016년 소득세 최고세율 2% 인상(38% → 40%),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 2% 인상(40% → 42%) 및 법인세 최고세율 3% 인상(22% → 25%)

○ 분야별로 보면 소비세제(5위), 개인소득세제(10위)는 양호하지만, 법인세제(28위), 국제조세(31위)가 취약함

○ 우리나라보다 조세경쟁력이 높은 국가는 에스토니아(1위), 뉴질랜드(3위), 스웨덴(7위), 독일(16위) 등이며, 낮은 국가는 미국(24위), 일본(26위), 프랑스(35위) 등임

□ 최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처럼 세제를 개선하지 않고 형평만을 우선하는 증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면서 조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과세제도 개선이 고려되어야 함

○ 이에 본 연구는 조세 국제경쟁력지수의 추이와 취약 분야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1) 현재 OECD 회원국은 36개국이지만, 리투아니아는 2018년 6월에 가입하여 조세 국제경쟁력지수의 2018년 평가에서 제외되었음

2) Daniel Bunn, Kyle Pomerleau, and Scott A. Hodge,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2018, The Tax Foundation, 2018.10

## II.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

### 1. 2018년 순위

□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는 국가의 세제가 조세정책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 즉 경쟁력과 중립성에 부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조세의 경쟁력'은 세율이 낮을수록 높으며, '조세의 중립성'은 경제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세수를 극대화하는 것을 말함<sup>3)</sup>

- 경쟁력 있는 조세는 한계세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임. 오늘날의 자본은 매우 이동성이 뛰어나고 기업은 전세계 여러 국가에 투자하여 가장 높은 수익률을 찾을 수 있으므로, 이는 기업이 세후 세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세율이 낮은 국가를 찾을 것이라는 의미임<sup>4)</sup>

- 특히 OECD에 따르면, 법인세는 경제성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세임<sup>5)</sup>

○ 조세경쟁력지수는 크게 법인과세, 개인소득과세, 소비과세, 자산과세, 국제조세 등 5개 분야를 평가하여 지수화하고 있음<sup>6)</sup>

□ 2018년 에스토니아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점의 조세경쟁력지수를 기록하여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5년 연속 최하점의 조세 경쟁력지수를 받고 있음

○ 에스토니아의 조세제도는 전체 분야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상위 국가들은 주요 세제 중 하나 이상의 우수한 부분으로 인해서 높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음

- 에스토니아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이 20%로 낮고, 원천지주의(영토주의)<sup>7)</sup>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해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음

- 낮은 법인세(15%)와 소득세(20%) 세율을 적용하는 라트비아는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3위인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소득세(최고세율 33%), 광범위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6위인 스위스는 법인세율(연방세 8.5%, 지방세 포함 21.15%)이 상대적으로 낮고, 광범위하고 낮은 소비세(8%)를 가지고 있음. 7위인 스웨덴의 법인세율(22%)과 개인소득세율(25%)은 낮은 편이고, 상속세가 없음

○ 일반적으로 조세경쟁력지수 하위에 위치한 국가는 법인소득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세율을 부과함

- 프랑스는 법인세율이 33.3%로 OECD 국가 중 제일 높고, 소득세율(45%)도 높은 수준이며, 금융거래세 등 다른 국가에 없는 세목이 존재함

- 최하위에 있는 5개국(칠레, 포르투갈,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은 폴란드(19%)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 법인세율(21.9%)보다 높음.<sup>8)</sup> 또한 5개국 중 칠레(19%)를 제외하고 평균 소비세율(19.1%) 이상의 높은 소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sup>9)</sup>

3) 조세의 중립성은 과세대상간 세율격차를 줄이거나, 과세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제고할 수 있음

4) 한 국가의 세율이 너무 높으면 다른 곳으로 투자를 유도할 것이고, 높은 한계세율은 조세회피로 이어질 수 있음

5)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ax and Economic Growth,"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620, July 11, 2008

6) 각 분야는 다음 세부항목으로 평가됨

- 법인과세: 세율(한계세율), 감가상각(이월공제 포함), 세제지원(공제) 등

- 개인소득과세: 세율, 자본이득세(이자, 배당), 복잡성 등

- 소비과세: 세율, 과세대상의 범위, 복잡성 등

- 자산과세: 재산세, 상속증여세, 양도거래세 등

- 국제조세: 과세관할권, 조세조약 등 네트워크, 조세회피방지규정 등

7) 영토주의 과세라고 말하기도 하며, 국내발생소득에 한해서 과세하는 방식임. 국내외발생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방식은 거주지주의(글로벌주의) 과세라고 함

8) 칠레(25%), 포르투갈(31.5%), 이탈리아(24%), 프랑스(33.3%)

9) 포르투갈(23%), 폴란드(23%), 이탈리아(22%), 프랑스(20%)

〈표 1〉 2018년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국가	순위	지수	법인과세 (순위)	개인소득 과세(순위)	소비과세 (순위)	자산과세 (순위)	국제조세 (순위)
에스토니아	1	100.0	1	1	9	1	6
라트비아	2	86.0	2	2	27	6	5
뉴질랜드	3	83.0	18	3	6	3	15
룩셈부르크	4	80.5	21	17	2	18	1
네덜란드	5	77.5	19	8	12	10	3
스위스	6	77.0	6	9	1	34	8
스웨덴	7	75.0	7	20	16	7	7
호주	8	72.2	27	19	7	4	17
체코	9	69.6	8	4	33	13	9
오스트리아	10	69.6	15	21	10	9	13
슬로바키아	11	69.4	10	6	32	2	27
터키	12	68.8	17	5	24	17	10
헝가리	13	68.4	3	15	34	26	2
핀란드	14	67.7	5	27	14	11	18
노르웨이	15	66.2	13	11	18	24	11
독일	16	65.3	24	28	11	14	11
대한민국	17	64.4	28	10	5	25	31
캐나다	18	64.0	22	23	8	20	22
벨기에	19	63.8	23	7	25	23	12
아일랜드	20	63.7	4	33	23	12	21
덴마크	21	63.7	14	30	17	8	23
슬로베니아	22	63.6	12	12	28	21	16
영국	23	63.1	16	24	22	30	4
미국	24	61.5	20	26	4	28	32
아이슬란드	25	60.2	11	31	19	22	20
일본	26	59.5	35	25	3	29	25
스페인	27	57.4	26	18	15	31	19
멕시코	28	57.2	31	13	26	5	34
그리스	29	51.9	25	14	30	27	29
이스라엘	30	51.7	29	35	13	15	33
칠레	31	48.3	30	22	29	16	35
포르투갈	32	48.2	33	29	31	19	28
폴란드	33	47.7	9	16	35	32	30
이탈리아	34	46.9	32	32	20	33	26
프랑스	35	41.4	34	34	21	35	24

자료: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2018, The Tax Foundation, 2018.10

## 2. 조세경쟁력지수의 추이 및 세제상 변화

□ 2017년 대비 2018년 순위가 크게 상승한 국가는 벨기에(+6)와 미국(+4)이고, 순위가 크게 하락한 국가는 일본(-3), 한국(-2), 슬로베니아(-2) 등임

○ 벨기에의 순위는 법인세율 인하 등 중요한 조세개정 후 25위에서 19위로 향상되었음. 법인세율이 2017년

33%에서 2018년에 29%로 인하되었고, 경영참여소득 면제<sup>10)</sup> 비율도 95%에서 100%로 인상했음

10) 사업소득과 그에 준하는 배당소득 등 비(非)이동성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 방식의 과세, 즉 국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제도임(오윤·임동원,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 「조세학술논집」 제31집제2호, 한국국제조세학회, 2015, p.189)

〈표 2〉 조세 국제경쟁력지수의 3년간 추이

국가	2016 (순위)	2017		2018		순위 변동 (2017년 대비)	지수 변동 (2017년 대비)
		순위	지수	순위	지수		
호주	8	8	75.73	8	72.20	-	△3.53
오스트리아	13	11	74.09	10	69.59	1	△4.50
벨기에	24	25	62.89	19	63.76	6	0.87
캐나다	18	19	67.40	18	64.00	1	△3.40
칠레	31	33	50.91	31	48.30	2	△2.61
체코	14	9	74.37	9	69.65	-	△4.72
덴마크	23	18	67.78	21	63.72	△3	△4.06
에스토니아	1	1	100.00	1	100.00	-	-
핀란드	11	13	70.01	14	67.75	△1	△2.26
프랑스	35	35	41.22	35	41.42	-	0.20
독일	15	16	68.87	16	65.33	-	△3.55
그리스	30	30	54.63	29	51.94	1	△2.68
헝가리	19	14	69.90	13	68.36	1	△1.55
아이슬란드	20	24	63.23	25	60.24	△1	△2.98
아일랜드	21	22	65.50	20	63.75	2	△1.75
이스라엘	28	29	54.83	30	51.68	△1	△3.15
이탈리아	34	34	49.56	34	46.86	-	△2.69
일본	26	23	64.89	26	59.51	△3	△5.38
대한민국	12	15	69.13	17	64.36	△2	△4.77
라트비아	2	3	84.72	2	85.97	1	1.24
룩셈부르크	5	4	83.25	4	80.46	-	△2.80
멕시코	27	27	59.06	28	57.20	△1	△1.85
네덜란드	4	5	80.31	5	77.53	-	△2.78
뉴질랜드	3	2	85.08	3	82.95	△1	△2.13
노르웨이	17	17	68.34	15	66.23	2	△2.11
폴란드	32	32	52.13	33	47.70	△1	△4.43
포르투갈	33	31	52.80	32	48.20	△1	△4.60
슬로바키아	10	10	74.18	11	69.36	△1	△4.82
슬로베니아	16	20	66.76	22	63.65	△2	△3.12
스페인	25	26	61.01	27	57.45	△1	△3.56
스웨덴	7	7	79.31	7	75.03	-	△4.28
스위스	6	6	79.53	6	77.05	-	△2.48
터키	9	12	73.05	12	68.78	-	△4.28
영국	22	21	66.56	23	63.05	△2	△3.51
미국	29	28	55.41	24	61.49	4	6.08

자료: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2018, The Tax Foundation, 2018.10

-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35%→21%), 해외자 회사배당금 과세면제(경영참여소득면제, participation exemption) 등 세제개혁을 통해 순위가 4계단 상승했음
- 일본은 지속적으로 법인세(23.2%로 인하<sup>11)</sup>)를 개선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타국의 세제개선보다 미약해서 순위가 3계단 하락했고, 우리나라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인상 등의 영향으로 2계단 하락했음

- 지수의 하락 정도는 일본(-5.38), 슬로베니아(-4.82), 한국(-4.77)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음
- 조세경쟁력지수 순위가 크게 상승한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개혁안은 법인세는 물론 개인소득세, 더 나아가 국제조세까지 포괄하는 세제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7년 12월 상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혁안은 법인세 및 소득세의 대규모 감세, 국제조세 체계의 전면적 개편, 다국적 기업의 소득 국외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이 핵심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OECD 국가 중 제일 높았던 35%인 법인세율을 2018년부터 21%로 대폭 인하했고, 법인세에 대한 최저한세<sup>12)</sup> 규정을 폐지했음<sup>13)</sup>
- 두 번째, 미국 내 다국적기업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소득유보 방지를 위해서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 및 일회성 과세를 통해서 미국기업의 해외유보금 환입을 추진하였음
  - 해외자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외원천 배당소득을 과세범위에서 제외해서 미국 내 다국적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임
  - 기존에 다국적 기업들이 벌어들인 해외 수익 중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미국으로의 송환을 미루고 있던 기존 해외 유보금들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현금에 대하여는 15.5%, 그 밖의 자산에 대하여는 8% 등 저세율로 1회 과세하기로 함
- 세 번째, 미국 기업의 조세 회피 목적의 해외 이전, 고용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원잠식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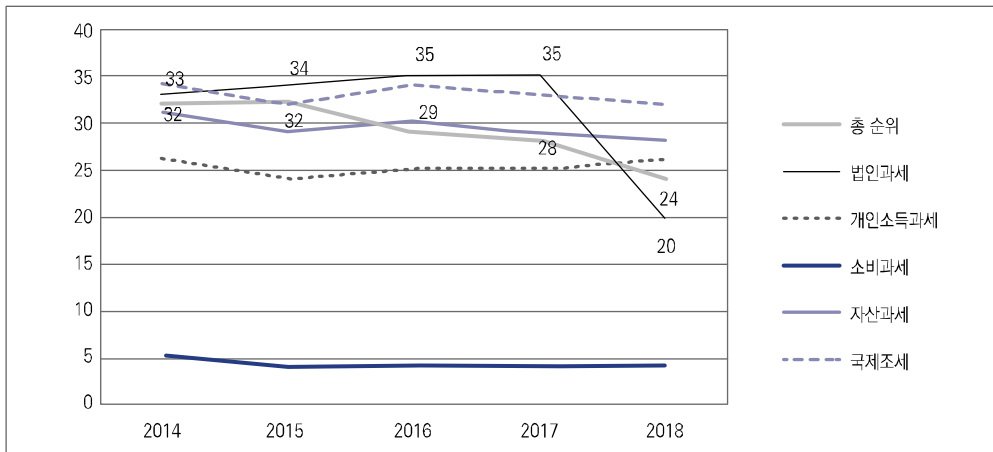
지세(Base Erosion Anti-Abuse Tax, BEAT)를 신설하기로 했음.<sup>14)</sup> 그 밖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39.6% → 37%),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금액도 2배로 확대했음(현재 1,120만 달러)

- BEAT는 다국적기업들이 해외 특수관계자들에게 로열티를 적게 받거나, 해외 관계사의 자산을 비싸게 매입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행위를 통해서 미국에서의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

- 미국은 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개혁안을 통해 2018년 조세경쟁력지수 중 법인과세 부분을 15계단이나 상승시켰고, 총지수의 순위도 4계단 상승되었음

- 11) 일본은 2000년 30%였던 법인세율을 4차례에 걸쳐 23.2%까지 인하하였음
- 12) '최저한세'란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임
- 13) 추가적으로 2017.9.28부터 2022.12.31 사이에 취득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들에 대하여 일시상각을 허용하되, 2023년 이후에는 추가 상각 폭을 점차 축소하기로 하였음.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 공제와 결손금 공제에 대한 제한규정이 도입되었음
- 14) 미국에서 평균 연매출 5억 달러 이상인 외국계기업의 경우, 미국자회사가 특정금액 이상 외국관계사에 지급한 금액 중 공제한 후 법인세를 적용한 금액이 공제금액을 합친 과세표준에 10%를 곱한 값보다 작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 10% 과세함

〈그림 1〉 미국의 조세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



### III.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검토

#### 1. 추이 및 특징

□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순위는 2016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이후 2년 사이 하락폭이 두 배로 큰 국가임

○ 하락기간 내 독일, 노르웨이, 체코 등에 역전되었으며, 하락폭은 슬로베니아(△6), 대한민국·아이슬란드(△5) 순임

- 2017년은 경쟁국가에 비해 부진한 세제개선으로 지수 하락(△1.04)보다 순위 하락(△3)이 컸고, 2018년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법인과세 분야가 8계단 하락했으며, 그 영향으로 전체순위 하락(△2)에 비해 지수 하락(△4.77)이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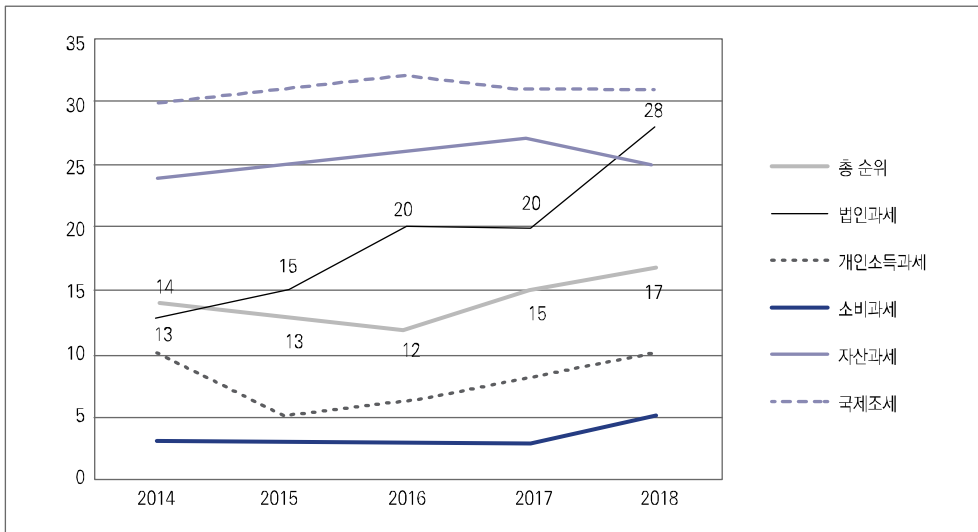
○ 개인소득과세와 소비과세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조세는 하위권(30~32위)에 머무르고 있음

○ 중위권(15~20위)이었던 법인과세가 2018년 하위권(28위)으로 하락하면서, 총 순위의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 → 25%)이 조세국제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국제조세가 개선되지 않는 점도 문제임. 현재 법인과세 및 국제조세 분야가 우리나라 조세국제경쟁력지수의 취약 분야임

○ 조세국제경쟁력지수 중 법인과세는 세율(한계세율), 감가상각(이월공제 포함), 세제지원(공제) 등으로 평가되는데, 평가 항목 중 세율이 2017년 18위에서 2018년 25위로 크게 하락했음

〈그림 2〉 우리나라의 조세국제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



- 세제지원 항목도 각종 공제축소로 인해서 2017년 31위에서 2018년 33위로 하락했음

○ 국제조세는 과세관할권, 조세조약 등 네트워크, 조세회피방지규정 등으로 평가되며,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방식(과세관할권) 항목이 2018년 32위로 최하위권임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해외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경영참여소득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우리나라는 과세관할권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음

○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법인세율을 지적할 수 있는데, 2017년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가 되어 OECD 평균(21.9%)보다 높아졌고 OECD 35개 국가 중 8번째로 세율이 높게 되었음<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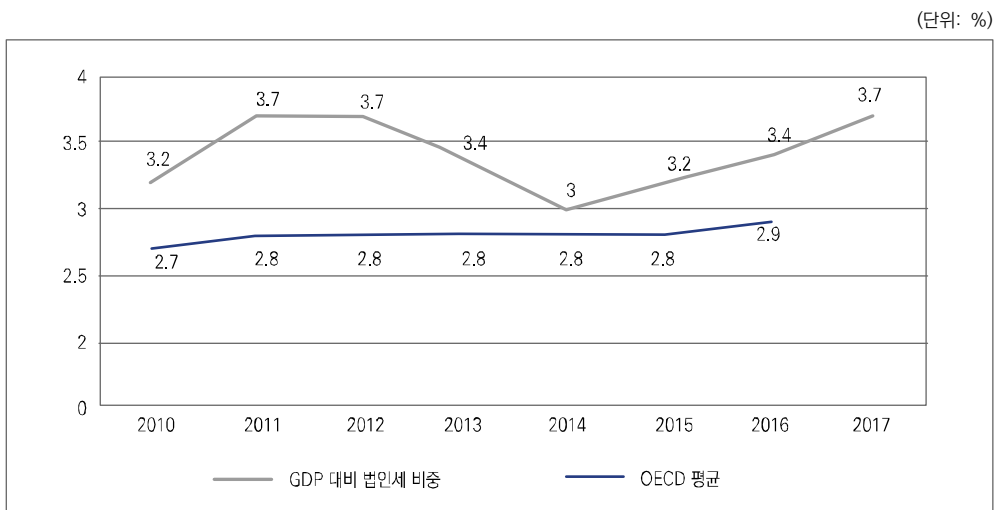
-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그 차이가 증가하고 있음

## 2. 취약 분야별 평가 및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법인과세 분야의 조세경쟁력지수 순위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15위(15년) → 20위(16~17년) → 28위(18년)], 2018년부터는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있음

15)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33.3%), 호주(30%), 멕시코(30%), 벨기에(29%), 그리스(29%), 뉴질랜드(28%) 등임. 인상 전 법인세율은 22%로 OECD 국가 중 16번째로 높은 국가였음

〈그림 3〉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자료: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p>○ 감가상각 및 이월공제 항목은 순위의 변동이 거의 없지만<sup>16)</sup> 그 지수가 2015년 55.1에서 2016년 49.7로 크게 하락했는데, 그 원인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2015년 말 개정시 100%에서 80%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sup>17)</sup></p> <p>○ 조세지원 항목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22위(15년) → 31위(16~17년) → 33위(18년)], 법인과세 분야의 순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p> <p>- 특히 R&amp;D 세액공제가 축소되고 있는 점이 조세지원 항목 지수 하락의 원인일 것임</p> <p>* &lt;연구단계&gt; 일반 R&amp;D 공제율 축소, ①당기분 방식: (13년) 3%~6% → (18년) 0%~2%, ②증가분 방식: (13년) 40% → (18년) 25%, 기업은 두 가지 공제방식 중 택 1</p> <p>* &lt;투자단계&gt; 일반 R&amp;D 설비투자 공제율 축소: (13년) 10% → (14년) 3% → (16년~) 1%</p> <p>- 또한 영국, 프랑스 등 12개 국가들<sup>18)</sup>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박스(patent box)<sup>19)</sup> 제도가 없는 것도 조세지원 항목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은 이유로 보임<sup>20)</sup></p> <p>□ 국제조세의 조세경쟁력지수는 30~32위<sup>21)</sup>로 계속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세부항목에 비해서 과세관할권 항목이 32위로 취약함<sup>22)</sup></p>	<p>○ 과세관할권의 핵심 내용은 해외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원천지주의를 채택하여 해외소득 중 사업 및 배당소득을 면제하고 있음</p> <p>- 특히 미국이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경영참여소득면제)를 채택하면서, OECD 국가 중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거주지주의)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어들었음</p> <p>16) 7위(2015년, 2018년)에서 8위(2016~2017년)를 기록하고 있음</p> <p>17) 현재는 60% 공제한도임(중소기업은 100%)</p> <p>18) 영국,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벨기에</p> <p>19) 특허 등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임</p> <p>20) 우리나라는 '특허 등의 양도 임대'에 대해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특허 등 관련 매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가 없음</p> <p>21) 2014년:30위, 2015년: 31위, 2016년: 32위, 2017~2018년: 31위</p> <p>22) 조세조약 등 네트워크와 조세회피방지규정 등 항목은 각각 15위와 13위로 중위권 이상임</p>
---	---

〈표 3〉 결손금 이월공제 국제비교

구 분	국 가
무기한 공제 허용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스페인,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아일랜드, 이스라엘, 칠레, 벨기에
무기한 공제 허용(한도 有)	이탈리아, 미국(80%), 오스트리아(75%), 독일·덴마크(60%), 영국(50%), 프랑스·슬로베니아·헝가리(50%)
10~20년 공제 허용	캐나다(20년), 핀란드(10년), 아이슬란드(10년), 룩셈부르크(17년), 포르투갈(12년), 멕시코(10년)
10년 공제 허용(한도 有)	한국(60%), 일본(50%)
10년 이하 공제 허용	네덜란드(9년), 스위스(7년), 체코·그리스·폴란드·터키(5년), 슬로바키아(4년)

자료: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2018, The Tax Foundation, 2018.10

-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은 자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의 기업은 해외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평균 이상의 세율국가의 기업은 원천지국뿐만 아니라 거주지국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함

○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는 거주지주의 과세의 한계 때문에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가 예상됨

- 우리나라의 2017년 해외직접투자액(ODI, 434.5억 달러)은 외국인직접투자액(FDI, 229.4억 달러)의 1.9배에 달하고 있고, 최근 8년간(2010~2017년) 해외로 빠져나간 순투자금액(ODI - FDI)은 1,129억 달러에 달하여 직접투자의 국내외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자로 인한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차액은 2015년을 제외하고는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배당되지 않고 해외에 사내유보된 당기순이익이 크게 누적되어 있을 것, 즉 국내로의 재투자 대신 해외유보가 증가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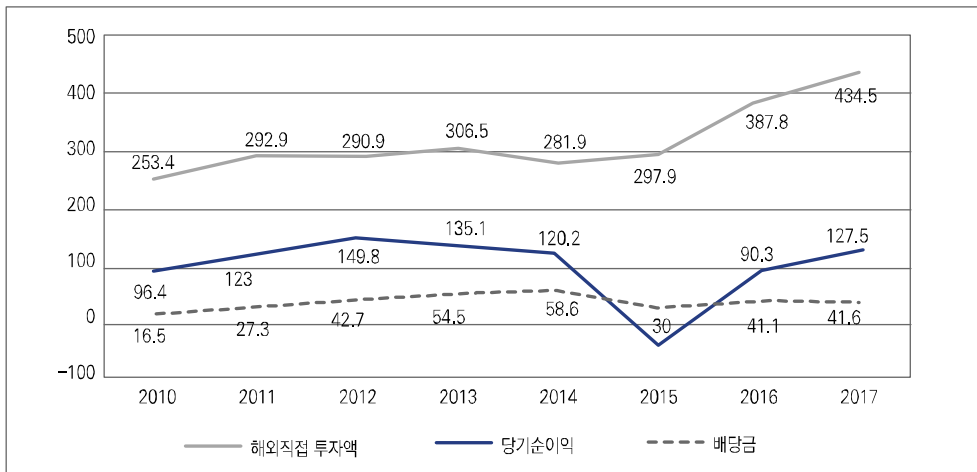
〈표 4〉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과세 사례

본사 소재지	지점 소재지	세전이익	세금 계산	세후이익
한국 (법인세율 25%)	아일랜드 (법인세율 12.5%)	5,000억 원	625억 원(아일랜드 납부액) + 625억 원(한국 납부액) = 1,250억 원	3,750억 원
영국 (법인세율 19%)			625억 원(아일랜드 납부액) + 0(영국 납부액)* = 625억 원	4,375억 원

\* 영국은 해외소득에 대해 소득면제(원천지주의 과세)하기 때문에 본사의 추가납부세액은 없음

〈그림 4〉 해외직접투자, 해외현지법인 당기순이익 및 배당금 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0-2017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지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취약분야인 법인과세와 국제조세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개선이 필요

○ 우선 법인과세 분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R&D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함

-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법인세율은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과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sup>23)</sup>을 주므로 인하되어야 함

\* 2010년 대비 2018년 법인세율이 인상된 OECD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6개국뿐이며,<sup>24)</sup> 인하 국가는 19개국임.<sup>25)</sup>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sup>26)</sup>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황이므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것임<sup>27)</sup>

- R&D 관련 조세지원(세액공제), 특히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 R&D 세액공제의 대상 및 요건<sup>28)</sup>을 완화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유도해야 함

○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근본적인 과세방식의 전환, 즉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유보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함

- 미국도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의 한계에 따라 자국 기업들이 해외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sup>29)</sup> 원천지주의로의 근본적인 과세제도의 변화와 그간 유보된 소득에 대한 일회성 과세를 추진했음

- 원천지주의로의 과세 전환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유턴뿐만 아니라 타국의 다국적기업 본사를 유치함으로써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유치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임

23)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자본비용을 증가시켜 투자 및 경제생 산량을 낮추고, 근로자의 임금과 투자자의 수익을 낮추는 영향을 줄 수 있음

24) 인상 국가는 슬로바키아, 멕시코, 아이슬란드, 그리스, 칠레 이고, 변동이 없는 국가는 10개국임

25) 인하 국가는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 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 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임

26) 대만 17%, 싱가포르 17%, 홍콩 16.5%, 태국 20%, 일본 23.2%, 중국 25%

27)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p 하락하고, 고용도 0.3~0.5% 감소한다고 함(김학수,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 민경제자문회의 토론회, 2016.8)

28) ①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2% 이상, ② 직전연도 R&D비용 중 신성장R&D 비중 10% 이상(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③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29) 2017년 기준 미국의 해외유보자본은 2조 6천억 달러로 추 산됨(Nick Wells, “Companies are holding a \$2.6 trillion pile of cash overseas that’s still growing”, CNBC, 2017.4.28)

#### IV. 요약 및 결론

□ 2018년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OECD 35개 국가 중 17위로 중위권이며, 2016년부터 조세경쟁력지수가 하락 중임[12위('16년) → 15위('17년) → 17위('18년)]

○ 반면,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2017년 말 법인세 인하(35% → 21%), 해외자회사배당금 과세면제(경영참여소득면제, participation exemption) 등 세계개혁을 통해 순위가 4계단 상승했으며, 특히 법인과세 부분을 15계단이나 상승시켰음

○ 우리나라는 중위권(15 ~ 20위)이었던 법인과세가 2018년 하위권(28위)으로 하락하면서 총 순위의 하락에 큰 영향을 주었고,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국제조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 → 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25%)은 OECD 평균(21.9%)보다 높고 OECD 35개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국제조세의 조세경쟁력지수는 계속 하위권(30 ~ 32위)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OECD 국가 중 5개국만 적용하는 거주지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그 한계 때문에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가 예상됨

□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지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취약분야인 법인과세와 국제조세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개선이 필요

○ 최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처럼 세제를 개선하지 않고 형평만을 우선하는 증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면서 조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과세제도 개선이 고려되어야 함

○ 우선 법인과세 분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R&D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함

-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법인세율은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과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므로 인하되어야 함

-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 R&D 세액공제의 대상 및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유도해야 함

○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근본적인 과세방식의 전환, 즉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유보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함